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7004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기중앙회가 국세청장에게 제공 요청하고자 하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8조의3)

1) 개정 법률에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공제가입자격, 공제금지급 및 지자체 보조금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및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3. ~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제공 요청 과세정보) 법 제1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3. 「소득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 8.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 8.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8조의3(제공 요청 과세정보)</u> <u>법 제1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u> 1.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u>사업자등록증명</u> 2.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u>폐업사실증명</u>, <u>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u>, <u>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u> 및 <u>표준재무제표증명</u> 3. 「소득세법」에 따른 <u>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u>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연락처	042-481-4596